

제 12 장 금융서비스

제 1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
 -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금융서비스 교역
2. 제9장(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제10장(투자)은 그러한 장 또는 그러한
장의 조항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1항에 규정된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의 목적상,
 - 가. 제9.12조·제9.15조·제10.11조·제10.12조·제10.13조·제10.16조·제
10.17조 및 제10.18조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고
 - 나. 제9.16조 및 제10.12조에 관하여는, 제9장(국경 간 서비스 교역)과 제
10장(투자) 간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 제10장이 불합치하는 범위 안
에서 우선 적용된다.
 - 다. 제10장(투자) 제3절은 당사국이 이 장에 통합된 제10.11조·제10.13조·
제10.16조 및 제10.17조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 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통화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 나. 공공퇴직제도 또는 법정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 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정을 위하여 또는 보증 하에 또는 재
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
4. 이 장은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
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
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2 조 내국민 대우

1.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금융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에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4. 당사국은 경우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타방 당사국의 투자자·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자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의 유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5.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투자자·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의 유사한 투자자의 투자와 비교하여 자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자국의 투자자·자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 12.3 조

시장접근

1. 제12.15조의 금융서비스 교역에 대한 정의에서 규정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지역이나 또는 전 영역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가. 수량쿼터·독점·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
-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다.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혹은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는,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 마.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 12.4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12.2조 및 제12.3조에서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가. 시장 접근에 대한 요건, 제한 및 조건
-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요건
-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2. 제12.2조 및 제12.3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12.3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12.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12A로 이 협정에 부속되어 그

와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2.5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규제상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위하여 협의한다.

- 가. GATS상에서 양 당사국이 행한 작업 및 금융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그 밖의 회의에서의 당사국의 작업, 그리고
- 나. 식별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규제상의 투명성 및 대중에게 소통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절차의 중요성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용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제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 전까지 공표한다. 당사국이 서명국인 금융서비스 교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표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공표가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규제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타방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제 12.6 조 예 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10장(투자)·제11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의 어

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9.15조·제10.7조 또는 제10.11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9.15조 및 제10.11조에 불구하고, 이 장에 포함됨에 따라,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의 제휴회사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 대한 또는 이들의 혜택을 위한 송금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어떠한 규정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 및 사기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금융서비스 계약 부도의 효과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교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7 조 국내규제

각 당사국은 부속서 12A의 자국의 양허표에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제 12.8 조 특정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의 특정 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2.9 조 인 정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규제기구 또는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국제 규제기구나 비당사국과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향후 체결될 것인지 또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감독·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또는 이와 비교 가능한 협정이나 약정을 자국과 교섭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경우 동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12.10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금융서비스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 및 심화 발전을 감독한다.
 - 나. 당사국이 제기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고려한다. 그리고
 - 다. 제12.12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한다.

3.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 협정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됨에 따라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 1년 후 소집되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소집된다.

제 12.11 조 협의

1. 일방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타방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는 금융서비스책임당국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 12.12 조 분쟁해결

1. 제20장(분쟁해결)의 관련 규정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 적용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제12.11조에 따라 개최된 협의는 제20.4조의 협의로 간주된다.
3.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0.7조가 적용된다.
 -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제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전부 구성된다.
 - 나. 그 밖의 다른 경우
 - (1) 각 당사국은 제4항 또는 제20.7조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 (2) 피소 당사국이 제12.6조를 발동할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 가. 금융기관의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 나. 객관성·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 다. 제4항 및 제20.7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제20.14조에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조치가,
 -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제 12.13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제10장(투자)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피소측이 제10.12조 또는 제12.6조를 발동하는 경우, 그 피소측의 요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동 법원은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를 접수할 때까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제10.12조 또는 제12.6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방어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까지 유효한 방어가 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결정문 1부를 법원에 송부한다. 그 결정은 법원을 기속한다.

3.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피소측 또는 소제기자의 당사국은 제20장(분쟁해결)의 관련조항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2.12조에 따라서 구성된다.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법원에 송부한다. 보고서는 법원을 기속한다.

4. 제3항에 따른 패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제3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법원이라 함은 제10.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원을 말한다.

제 12.14 조 양허표의 수정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서비스 교역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요청을 한 후 3월 내에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에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를 하기 전 부속서 12A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교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협의 약속의 일반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12.15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교역이라 함은 다음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의 공급
- 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공급
- 다. 일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 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
- 라. 일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 서의 그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공급

상업적 주재라 함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법인의 구성·인수 또는 유지, 또는
- 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위치하는 당사국의 법률상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금융 중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지사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보험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 및 금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에 부수되거나 보조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부속서 12B에 명시된 활동을 포함한다.

금융서비스 소비자라 함은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금융서비스 교역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제10장(투자)에서 정의된 투자를 말하며, 그 장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 다음은 예외로 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위치하는 영역에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금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이다. 그리고
- 나. 가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증서가 아닌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의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 소유의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전적으로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법인이라 함은 영리 또는 비영리의 여부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신탁회사·조합·합작투자·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 또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등록되거나 설립되고 그 곳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금융기관의 지사를 말한다.

타방 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 가. 비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지점을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타방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 (2) 가호에 규정된 타방 당사국의 법인

당사국의 자연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 가. 그 당사국의 공민인 자, 또는
- 나. 그 당사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자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업적인 조건으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제15장(경쟁)의 목적상 지정된 독점 또는 공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의 민간기관

금융서비스 책임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통화청